

# 外國職務發明制度 및 國有特許處理規程抄

< II >

一 日 本 國 一

## [3] 國家公務員의 職務發明에 관한 補償金 請求節次 및 支拂方法

(1974. 3. 13 制定)

特許法 第35條의 规定을 實施하기 위해 國家公務員의 職務發明에 관한 補償金의 請求 및 支拂方法을 다음과 같이 定한다.

**第1條 (定 義)** 이 規程 및 따로 정하는 國家公務員의 職務發明에 대한 補償金 支拂要領에서 직무발명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이 그 性質上 當該發明을 한 국가공무원이 所屬하는 機關의 所管 業務範圍에 속하며 또한 당해 발명을 함에 이른 行爲가 국가공무원의 過去 또는 現在의 직무에 속하고 主로 職務時間 중에 이루어진 발명을 말하되 發明者는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을 말한다.

**第2條 (登錄補償金의 請求節次)** 發明자는 登錄補償金請求書(樣式 1)를 소속 行政機關長에게 提出한다. 다만, 發明자가 2名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持分에 따라 각각 發明자가 등록보상금을 청구한다.

2. 前項에서 一般會計가 特許를 받을 權利를 承繼한 경우는 각 行政기관의 장은 제출된 그 청구서를 4分期別로 取合하여 그 청구서에 각각 직무발명임을 證明하는 文書(樣式 2) 및 登錄補償金 請求一覽表를 添付(양식 2에 대해 發明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직무발명이라는 증명문서를 첨부한다)하여 각각 2通씩을 各期의 翌月 25일까지 特許廳長官 앞으로 제출한다. 다만 제4분기는 그 제4분기분을 3월 15일까지 취합하여 제출하여 사무절차상 청구 불능한 것은 翌年 제1분기와 함께 청구로 한다.

3. 제1항에서 特別會計가 特許를 받을 權리 또는 特許權을 승계한 경우는 그 特別회계를 관리하는 각 行政기관의 장은 기관마다 등록보상금 청구일람표(양식 3)를 특허청장판에게 제출하여 권리내용 등

의 確認을 받기로 한다. 다만, 제출기간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準用한다.

**第3條 (實施補償金의 請求節次)** 發明자는 실시보상금청구서(양식 4)를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한다.

2. 전항에서 일반회계가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행정기관장은 제출된 그 청구서에 직무발명임을 증명하는 문서(양식 2), 國家의 收入을 증명하는 書面(양식 5), 특허전의 실시 또는 讓渡契約書의 寫本 및 실시보상금청구일람표(양식 6)를 첨부하여 각각 2통씩을 每年 2월 1일까지 특허청장판에게 제출키로 한다.

위의 실시보상금청구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서에 따라 국가에 納入한 1년간의 金額에 依據(그 算定方法은 제6조의 定함에 따른다), 청구금액을 기재한 후 청구기로 한다.

3. 제1항에서 特別회계가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特別회계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은 기관마다 실시보상금 청구일람표(양식 6) 및 특허권의 실시 또는 양도계약서의 사본을 특허청장판에게 제출하여 권리내용 등의 확인을 받기로 한다. 다만 제출기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第4條 (補償金請求權의 承繼人 또는 轉退職者의 補償金請求節次)** 前 2條의 규정은 發明자가 保有하는 보상금의 지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전퇴직한 發明자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의 청구를 할 경우에 준용한다.

2. 權利承繼者가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를 立證하는 서면(戶籍抄本의 사본 등) 2통을 첨부한다. 다만, 양식 1 또는 4의 보상금청구서의 「※( )」란에는 그 승계인의 住所 및 姓名을 기재하고 직무발명증명서(양식 2)의 「6. 其他」란에는 그 승계인의 성명, 이유(發明者 死亡 등) 및 關係(발명자의 妻等)를 기재한다.

3. 전 퇴직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는 청구서에

전 퇴식 후의 現職名을 기재하고 직무발명증명서  
(양식 2)의 「6. 기타」란에는 국가가 직무발명을 승  
제했을 때의 직명과 전 퇴직 年月日을 기재한다.  
**第5條 (補償金의 支拂과 通知)** 特許를 받을 권리,  
또는 특허권을 일반회계가 승계할 경우에 발명자로  
부터 각 행정기관장을 經由하여 보상금, 또는 실시  
보상금의 청구가 있을 때는 특허청에서 직접 本人앞  
으로 送金한 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 
한다.

**第6條 (補償金支拂方法의 細目)** 등록보상금 또는  
실시보상금지불방법의 細目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

樣式 1

登 錄 捕 償 金 請 求 書	
年      月      日	
○○○貴下	
住 所	
現 職	
姓 名	(住 所) (姓 名)
國家公務員의 職務發明에 관한 补償金의 請求節次 및 支拂方法에 따라 다음의 發明에 관한 登錄補償金을 支拂하도록 別添書類를 부쳐 請求합니다.	
다      음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金額 :</li> <li>2. 發明者의 姓名 :</li> <li>3. 發明者가 職務發明을 했을 때의 所屬機關 :</li> <li>4. 權利名 :</li> <li>5. 發明의 名稱 :</li> <li>6. 特許 또는 登錄番號(權利取得國名을 記入할 것) :</li> <li>7. 特許 또는 登錄年月日 :</li> <li>8. 權利者名 :</li> <li>9. 發明者の 持分比率 :</li> </ol> <p>(2명 이상의 공동발명의 경우는 각 발명자의 그 持分比率에 따라 금액을 기재한 후 각각 청구서를 제출할 것)</p>	

樣式 2

職 務 發 明 證 明 書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發明의 名稱 :</li> <li>2. 特許 혹은 登錄番號 또는 出願番號 : (權利取得國 또는 出願國名을 기입할 것)</li> <li>3. 特許 혹은 登錄年月日 또는 出願年月日 :</li> <li>4. 發明者의 現職 :</li> <li>5. 發明者의 姓名 :</li> <li>6. 其他</li> </ol> <p>위는 職務發明임을 證明함.</p>	
年      月      日	
行政機關名 :	
行政機關長 姓名 :	

※ (樣式 3. 4. 5. 6은 紙面 관계로 10月號 國家公務員의 職務發明에 대한 补償金支拂要領 末尾에 收錄할 예정  
이오니 資料로써 參考하시기 바랍니다)

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지불요령에 따  
르기로 한다.

**第7條 (職務發明에 관한 發明에 대한 补償)** 本規程  
및 要領은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발명을 한  
국가공무원의 申告에 따라 국가가 그 발명에 관련된  
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의 승계를 승인한 경  
우에 준용한다.

**第8條 (考案 및 意匠의 創作에의 準用)** 이 규정 및  
요령은 고안 및 의장의 창작에 준용한다.

#### 附 則

1. 이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施行한다.